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(안)

의안 번호 제59호

제출연월일 2005. 9.28. 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안이유

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·임·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로부터 농·임·어업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: 위원장포함 7인 이내
- 나. 피해신고 :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 피해 신고서에 근거서류 첨부 시장에게 신고
- 다. 현장조사 : 해당 읍·면·동장이 리·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
- 라.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개최 : 보상금지급 심의 결정통지
- 마. 지원금의 지급 :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에 의거 지급하되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함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합의 : 기획담당관실, 환경보호과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(2005. 9. 2 ~ 9. 26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(안)

-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야생동물"이라 함은 멧돼지, 산토끼, 노루・고라니를 말한다.
 - 2. "농작물"이라 함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.
 - 3. "농업인"이라 함은 「농지법 시행령」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4. "주소"라 함은 「주민등록법」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.
- 제3조 (지원대상 요건)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 - 1. 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 지역 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
 - 2. 시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
- 제4조 (피해농지 면적기준)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5조 (지원 제외대상)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1.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
 - 2.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
 - 3.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

- 제6조 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시농작물 피해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지급업무담당국·소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야생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사천시의회 의원(1인)
 - 2.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.
-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1. 피해액 산정 관한사항
 - 2. 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 (피해신고 등) ①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
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현장조사는 피해지역 리·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하며, 해당 읍·면·동장이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시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8조 (피해액 산정) ①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.
- ②농촌진흥청 농축작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. 단,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 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농작물로 한다.
- 제9조(지원금의 지급 등) ①지원금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지원금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- ②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- ③지원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%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작목별 생육단계 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- ④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이의신청)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지원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농작물피해 신고서						
피해농업인	성 명					
	주 소					
	연 락 처	전화번호 :	(กั	(휴대폰 :		
	지 번					
피해농경지	경작면적(m²)					
	피해면적(m²)					
	피해농작물	1.	2.	3.		
피해를 약	일힌 동물					
	Ī	피해발생 농경	지 약도(또는 위치설	명서)		
「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						
같이 신고 합니다						
		년	월 일			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사 천 시 장 귀하						
근거자료 :						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농작물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						
신청인	성 명		주민	등록번호		
	주 소					
토지소재지 (지번. 지목. 면적. 기타)						
지원대상자 (주소. 성명)						
보 상 금		급		원		
「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」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.						
		년	얼	일		

- 7 -

사 천 시 장 (인)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농작물피해 지원금 신청서					처리기간		
						30일	
신청인	① 성	명		③주민등록번호			
	② 주	소					
④ 토 지 소 재 지 (지번, 지목, 지적, 기타)		})					
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							
⑥ 피 해 내 역 (작물명, 면적)							
⑦ 피해 금액			원				
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							
「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」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신청합니다.							
	년	월	일 (/	서명 또는 인)			
사 천 시 장 귀하							
구비서류 : 피해근거서류 1부					수수료 없 음		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10일	
ارم اخ الا	① 성 명		③주민등록번호			
신청인	② 주 소					
④ 토 지 소 재 지 (지번, 지목 ,지적 ,기타)						
⑤ 당해 토지어 신청인의 권						
⑥ 피 해 내 역 (작물명, 면						
⑦ 지원금지급	통지금액	원				
⑧이의 신청사	щò					
「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 지급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사 천 시 장 귀하						
구비서류 :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					수수료	
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			없 음		

관계 법령 발췌

농어업재해대책법
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1~5 (생략)

5. "農作物"이라 함은 食用作物·工藝作物·飼料作物·錄肥作物·園藝作物·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.

농지법 시행령

- 제3조 (농업인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개정 1996.8.8, 2002.3.30>
 - 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- 2.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·버섯재배사·비닐하우스 기타 농림 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
 - 3. 대가축 2두, 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 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
 - 4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